

의료보험제도를 활용한 결핵관리의 전망과 기대

이창길/의료보험연합회 전산운용과장

1.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가. 연혁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건강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保護)”를 규정한 헌법정신(憲法精神)에 입각하여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1963년 제정)을 전면 개정(改定)하여 77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00인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當然適用)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 아래

- 1979.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적용.

- 1979. 7. 1 상시근로자(當時勤勞者) 30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擴大適用).

- 1981. 1. 1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 1982. 7.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홍천군, 군위군, 옥구군).

- 1983. 7.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실시(강화군, 보은군, 목포시).

- 1983. 12. 2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1989. 7. 1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나. 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궁극적(窮極的) 목표는 전국민이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 직장의료보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조합(組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지역의료보험

일정한 관할지역내(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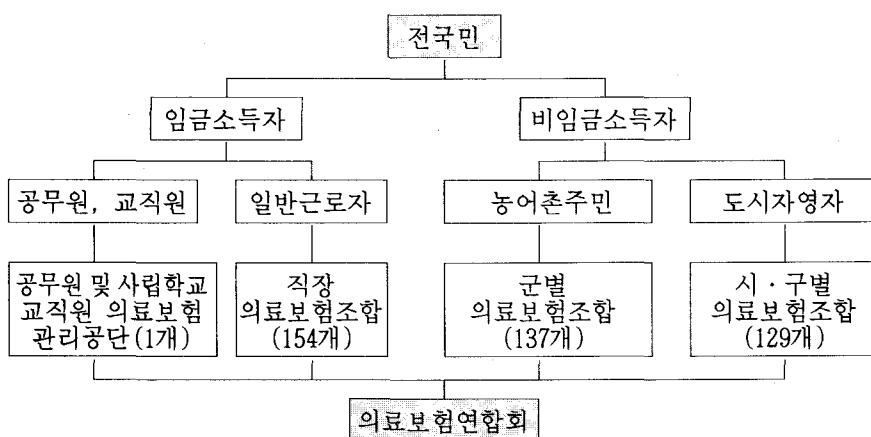
주를 조합원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사립, 사법, 행정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각급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醫療保險管理公團)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다. 제도의 내용

| 구 分 |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공(公), 교(敎) 의료보험 |
|----------|-----------------------------------|---|---|---|
| 적용대상 | 사업장 근로자 | 지역주민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 |
| 보 험 자 | 의료보험조합 | 의료보험조합 | 공, 교 공단(公, 敎 公團) | |
| 자격관리 | 사용자 신고제 | 세대주 신고제 | 기관장 신고제 | |
| 재 원 조 달 | 보 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내에서 조합자율 결정 - 사용자 1/2 부담 - 피보험자 1/2 부담 | 소득재산 및 가구원 수에 따른 3~30등급 정액제 - 전액 피보험자 부담 | 표준월급여액의 4.6% (시행령으로 규정) - 정부 1/2 부담 - 피보험자 1/2 부담 |
| | 국고 부담 | 없 음 | 보험급여비의 일부와 관리운영비전액 | 없 음 |
| 보험료의 정 수 |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급여지정 금융 기관에 납부 |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월별, 분기별로, 급여 지소 금융기관에 납부 | 기관장이 매월 급여에서 공단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
| 보험급여 | 요양급여, 분만급여, 부가급여 | 좌 동 | 좌동 + 건강진단 | |
| 진료권 | 대진료권(8개) 중진료권(140개) | 좌 동 좌 동 | 좌 동 좌 동 | |



2. 의료보험 급여현황 ('91. 12. 31 현재)

| 구 분 | 진료건수 | 총진료비 | 급여부담진료비 | 본인부담진료비 | 건당진료비 |
|---------|-----------------------|------------------|----------|----------|----------|
| 계 | 141,289천건 (100.0%) | 32,012억원 | 20,059억원 | 11,943억원 | 23,584원 |
| 직 장 | 60,678 " (42.9%) | 12,975 " | 8,033 " | 4,941 " | 21,384 " |
| 지 역 | 도 시 | 48,002 " (33.9%) | 10,926 " | 6,824 " | 22,761 " |
| | 농어촌 | 14,700 " (10.4%) | 4,035 " | 2,662 " | 27,454 " |
| 공 · 교공단 | 17,909 " (12.8%) | 4,076 " | 2,540 " | 1,531 " | 22,740 " |

3. 요양기관 종별 청구 및 심사현황 ('91년도중)

| 종 별 | 청구건수 | 청 구 총진료비 | 심사결정 총진료비 | 삭감률 | 건 당 내원일수 | 건 당 투약일수 | 비 고 |
|-----------|------------------|----------|-----------|-------|----------|----------|-----|
| 계 | 141,289천건 | 32,801억원 | 32,012억원 | 2.41% | 2.27일 | 4.76일 | |
| 종 합 병 원 | 14,952 " (10.6%) | 14,074 " | 13,591 " | 3.49% | 2.85 " | 13.31 " | |
| 병 원 | 5,857 " (4.1%) | 2,463 " | 2,391 " | 2.92% | 2.76 " | 7.12 " | |
| 의 원 | 92,436 " (65.4%) | 13,661 " | 13,452 " | 1.53% | 2.39 " | 4.22 " | |
| 치 과 병 원 | 93 " (0.06%) | 30.8 " | 30 " | 2.55% | 2.36 " | 3.31 " | |
| 치 과 의 원 | 12,882 " (9.1%) | 1,892 " | 1,878 " | 0.74% | 1.72 " | 1.92 " | |
| 조 산 소 | 11 " (0.007%) | 7.1 " | 7.1 " | 0.37% | 2.09 " | 2.83 " | |
| 보 건 기 관 계 | 1,725 " (1.2%) | 109 " | 107 " | 1.66% | 1.66 " | 4.89 " | |
| 보 건 소 | 289 " (0.2%) | 14.9 " | 14.8 " | 0.30% | 1.45 " | 4.75 " | |
| 보 건 지 소 | 80 " (0.05%) | 40.5 " | 40.2 " | 0.14% | 1.66 " | 2.27 " | |
| 보건진료소 | 385 " (0.27%) | 13.7 " | 13.6 " | 0.29% | 1.69 " | 4.79 " | |

| | | | | | | | |
|-------|------------------|--------|--------|-------|--------|--------|--|
| 보건의료원 | 24.9 (0.02%) | 39.8 " | 38.3 " | 3.54% | 1.51 " | 6.10 " | |
| 한방병의원 | 2,149 (1.5%) | 3.9 " | 315 " | 0.9 % | 4.7 " | 4.97 " | |
| 약국 | 11,184 (7.9%) | 245 " | 239 " | 2.41% | 1.00 " | 2.00 " | |

4. 지역조합 결핵진료 급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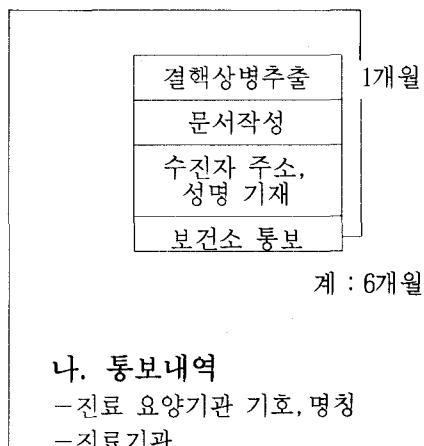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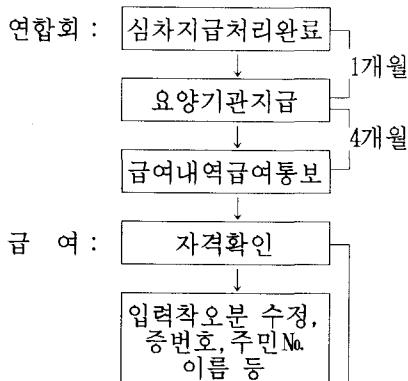
| 구 분 | 진료건수 | 실인원 | 총진료비 | 급여부담금 | 건내원일수 | 건당투약일수 |
|-------------|--------------------|-----------|--------------|-------------|--------|---------|
| 전체상병 | 141,289천건 | | 32,012억원 | 20,059억원 | 2.27일 | 4.76일 |
| 결핵상병 | 345,424 (0.24%) | 126,046억원 | 12,726,618천원 | 8,030,093 " | 2.75 " | 17.10 " |
| (최고) 성동구 | 8,881 " | 2,994 " | 262,570 " | 154,709 " | 2.59 " | 18.50 " |
| (최저) 화천군 | 77 " | 35 " | 3,535 " | 2,506 " | 2.63 " | 16.37 " |

5. 3개 시범조합 결핵진료실적

| 조합별 | 건 수 | 실 인 원 | 총진료비 | 조합부담금 | 건당내원일수 | 건당투약일수 |
|-----|---------|---------|-----------|----------|--------|---------|
| 홍천군 | 523건 | 198명 | 27,604천원 | 18,854천원 | 2.77일 | 16.70일 |
| 충주시 | 1,023 " | 977 " | 38,443 " | 24,619 " | 2.59 " | 15.64 " |
| 중랑구 | 4,534 " | 1,674 " | 150,443 " | 90,834 " | 2.98 " | 16.58 " |

6. 결핵진료분 보건소 통보현황

가. 통보절차



나. 통보내역

- 진료 요양기관 기호, 명칭
- 진료기관

-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등 9개 항목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개선점

1) 현행 진료비명세서는 최종 결핵으로 확진된 내역을 알 수가 없고 대량을 정해진 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심사업무의 특성상 진료내역에 의한 결핵환자의 발견에는 한계가 있음.

2) 진료비명세서의 상병기호(傷病記號)에 의한 결핵 수진자 추출시 요양기관의 기재착오, 연합회(聯合會)의 입력착오에 의한 결핵상병자(結核傷病者)의 누락 또는 타상병(他傷病) 수진자(受診者)의 결핵상병자로 통보되는 현상 발생.

3) 원격지(遠隔地)에 거주하는 결핵수진자의 경우 소속조합과 원격지의 보건소와의 업무협조 체계 필요.

4) 결핵환자의 보건기관 이용도 미흡.

5) 보사부 소관업무 전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관리 지침(91.7.13 보사훈령 제623호)에 의거 저촉 여부 검침.

나. 개선방안

1) 객담검사기관의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에 의한 보다 확실한 결핵환자 발견가능 방안검침.

– 객담검사기관의 직접청구에 의한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과 보다 확실한 결핵환자 발견가능.

–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작성업무 경감(輕減) 도움.

2) 진료비명세서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조합의 전문 심사인력이 없는 현재로는 요양기관의 상병기호(傷病記號)를 정확히 기재토록 홍보와 입력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

3) 진료내역은 소속 조합에 통보되므로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통보하는 것은 전국의 조합에서 통보되는 등 보건소의 업무량 과다(過多)가 예견되므로 거주지의 의료보험조합에서 일괄 취급하여 보건소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보건기관의 결핵환자 진료시설, 인력, 약재 등의 보강과 진료능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결핵환자의 일반 요양기관 이용에 앞서 보건기관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의 보건소 통보업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장기계획이 필요함.

5) 개인정보 보호관리 지침의 제6조(情報의 使用)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제공은 법령상 행정업무 대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문서로 요청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험에 의한 결핵환자 통보업무를 관련 법령에 삽입하는 등 관련 법규의 검침이 요망됨.

8. 결론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의 개선 보완을 통하여 현행 3개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핵가능 환자의 보건소 통보 업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국민으로 실시한다면 의료보험조합의 업무 부가(負苛)를 주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결핵환자 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